



제 418회 국회(정기회)
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< 유아 체육 활동 진흥 시책 등 >

■ 신동욱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3967호)

2024. 11.
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전문위원 전완희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유아 체육 활동 진흥 시책 등	2

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: 신동욱의원 등 10인
2. 발 의 일: 2024. 9. 12.
3. 회 부 일: 2024. 9. 13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, 학생, 직장인 및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.

유아기의 체육활동은 유아의 신체 및 운동기능 발달, 자아개념 및 정서적인 안정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침. 그런데 미세먼지·황사 문제로 실외 체육활동이 제약되고, 도심지 내 유아놀이공간 등 시설도 부족한 상황임. 이러한 상황에서 유아들이 건강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확충 및 놀이·체육 활동 프로그램 등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아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체육활동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2 및 제13조제3항 신설 등).

Ⅲ. 검토의견

1. 유아 체육 활동 진흥 시책 등

가. 개정안의 요지

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아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, 유아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또는 관련 비용·시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2, 제13조).

[개정안 조문 대비표]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의2(<u>노인</u> 체육의 진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<u>노인</u>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	제10조의2(<u>노인과 유아</u> 체육의 진흥) ① ----- <u>노인과 유아의</u> ----- -----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<u>노인</u>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.	② ----- <u>노인과 유아의</u> ----- ----- -----.
제13조(체육시설의 설치 등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3조(체육시설의 설치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</u>
③ ~ ⑤ (생략)	④ ~ ⑥ (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)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체육 시설의 설치·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	⑦ -----제6항----- ----- -----.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나. 검토의견

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아 체육 진흥 및 유아 체육 활동시설 확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, 유아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비용·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유아기 체육활동은 향후 신체 및 정서발달 등에 중요한 요소이고, 현재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유아 체육활동 지원 사업(2014년~) 및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(2024년~)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‘유아’를 특정한 지원 관련 규정이 없는 등¹⁾²⁾ 국가

1) 교육부와 문체부 공동소관의 「학교체육 진흥법」 제14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나, 유치원 밖의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.

학교체육 진흥법
제14조(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유아교육법」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및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7조에 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.

- 2) 「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」(문체부, 2023.12.)상 지원 근거 마련
[전략1] 스포츠로 국민건강·지역활력 제고
① 선진 수준의 전 국민 스포츠활동 지원
- 2. 생애주기별 최적화된 생활스포츠 프로그램 지원
☐ 유아 스포츠활동 활성화
○ (프로그램 지원 확대) 유아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확대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즐기는 스포츠활동 확대('23년 330개소 → '28년 1,400개소) 및 운영 방식 다양화(민간체육교육 업체, 민간지도자 활용 등)

및 지자체 차원에서 현 사업들을 포괄하여 유아 체육 진흥 관련 거시적인 목표를 설정·실현하도록 하고 ‘유아’를 체육활동 지원대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임.

참고로, 안 제10조의2에 ‘노인’과 ‘유아’를 함께 규정한 것과 법체계를 맞추어 안 제13조제3항에서도 ‘노인’과 ‘유아’를 함께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[표] 유아 체육활동 지원 사업

추진체계	○ 문화체육관광부→대한체육회→회원종목단체 및 시도/시군구 체육회		
사업목적	○ 유아체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생활체육 실현		
사업대상	○ 유아(만 3세~취학 전) 및 유아 가족		
사업내용	○ 유아체육프로그램 교실 운영 - 국·공립 및 사립 유아시설에서 체육프로그램 운영 ○ 비대면 유아가족프로그램 보급(일반용역) - 유아가족(1,000여 가정)에게 홈 운동용품 및 운동프로그램 개발·보급		
소요예산	'24년 980백만원 (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(5161-301) 중 ‘유아체육 활동지원’)		
추진실적	연도	유아체육교실 운영 수(개소)	예산(백만원)
	2021	174	537
	2022	258	537
	2023	349	620
	2024 (추진 중)	약 450	980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

- (유아 특화 시설건립 지원) ‘유아친화형’ 국민체육센터 지원모델 시설건립 지원('24년~'28년, 35개소)으로 유아 체육시설 접근성 제고

[표]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

추진체계	○ 문화체육관광부→지자체(자본보조)		
사업목적	○ 어린이집·유치원 등과 연계하여 유아풀, 실내·외 놀이기구 설치 등 놀이와 다양한 신체활동이 가능한 체육시설 조성		
사업내용	○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비용 지원 - 개소별 30억원 정액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차 2억원(설계비) 지원 후 사업별 추진상황에 따라 연차별 예산반영하여 차등지원		
소요예산	'24년 600백만원 (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(5163-300) 중 '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')		
추진실적	연도	센터 개소 수	예산(백만원)
	2024(신규)	3 (파주시, 청주시, 하동군 건립 중)	600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

문의처

02)6788-5375